

의안번호	제143호
의결 연월일	2015년 3월 13일 (제338회)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5년 3월 13일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43
----------	-----

제안연월일 : 2015년 3월 13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회의 결과를 공유하여 의정현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여행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10조)
 - 귀국 후 1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3. 개정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여부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별첨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 **공무국외여행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공무국외여행규정** [훈령 제1357호]

제9조(귀국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귀국보고서와 수집한 자료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고, 보고서의 공동 활용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